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단5019636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6. 11. 18.

판결 선고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639,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2015. 3.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경 성아테크 주식회사(이하 '성아테크'라 한다)와 원도급공사인 '미8군 사령부 건설공사' 중 '일반 및 소화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781,114,0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2. 3.부터 2015. 7.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8. 29.경 성아테크와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218,992,376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성아테크는 2013. 12. 2.경 원고와 기성지급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성지급 이행확인서에는 '성아테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자재납품업자, 장비임대업자 등(이하 '거래처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만약 원고가 성아테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아테크가 거래처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성아테크를 대신하여 거래처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아테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성아테크는 2013. 12. 16.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2013. 12. 16. (변경기준일 2014. 8. 29.)
보증금액	143,433,420원 (변경금액 156,569,770원)
보험기간	2013. 12. 3. ~ 2015. 9. 27.
보증내용	건설하도급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대지급 채무를 지급보증
특기사항	피보험자가 하수급인에게 대지급하는 기성금의 대지급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 담보함

라. 성아테크는 2015. 2월경 거래처 등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원고는 성아테크를 대신하여 성아테크의 거래처 등에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노임 이외에 2015. 2.부터 2015. 7.경까지 택배·우편요금 357,760원, 화물차유류비 260,000원, 소모용품(잡자재비) 278,482원, 숙소비 9,390,000원, 숙소관리비 4,510,960원, 식대 26,642,346원 합계 54,639,548원(이하 '이 사건 미불외 추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성아테크를 대신하여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뿐만이 아니라 원고가 성아테크의 모든 거래처 등에 대신 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내에 성아테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미불외 추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4,639,548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문언상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기성금 이외에 이 사건 미불외 추가지급금까지 담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항영희